

##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

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와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는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및 연계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및 연계·협력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호에 대해 상호 협력 한다.

1. 보조기기 적용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공유의 상호 협력
2. 양 기관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
3. 장애인보조기기 후원연계, 정보제공 및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지원
4. 기타 상호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

제3조(협약기간)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 협약 해지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다. 다만,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 종료 시 자동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(신의성실의 원칙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성실히 협력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.

제5조(비밀 및 보완유지)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본 조항의 의무는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된다.

제6조(협약발효) 동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, 동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는 서명 날인하여 각각 원본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4월 25일



김해시복지재단

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

관 장 심우영

서 명

심우영



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

Gyeongnam Assistive Technology Center

센터장

서 명

임호진

임호진